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09. 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20세 →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사무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안 제2조제4항)
-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3조)
- 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 체류지로 신분 확인(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리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

3. 개정근거

- 「주민투표법」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 통보 및 후속조치 철저 : 서울시 행정과-3151(2009.02.1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

- (1) 입법예고 : 2009. 2. 26. ~ 2009. 3. 18.(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03.26)
-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

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마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

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④ 법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 | |
|--|----|------------|---------|--|
| 주민투표 청구요지 | | | | |
|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수입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마포구청장 귀하</p> | | | | |
|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 서식 】

| 이 의 신 청 서 | | | |
|--|----|-----------|--------|
| 신 청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 상 | | | |
| 신 청 취 지 | | | |
| 신 청 사 유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마포구청장 귀하</p> | | | |
|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